

2026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채용 3차 공고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3차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7월 29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1. 채용분야 및 예정인원

채용분야	모집인원	세부사항	근무장소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육아휴직 대체]	1명	휴직 대체 근로자로서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불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

○ 담당예정 직무

- 기간제근로자(사무보조원)
 - 체류관리, 사증, 증명발급, 국적, 난민, 사범심사, 조사, 정보공개, 보호외국인 면회 관리 등 소속과의 출입국관리 행정사무 중 지정하는 업무
 - 민원안내·접수, 신청서 등의 전산입력, 기록물 스캔 등 소속과의 행정업무 지원
 - 기관의 운영상의 사유로 부서 이동 시 소속 부서의 행정사무(보조) 등
 - 기타 기관장(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로서 무기계약(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불가

-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여부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원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여부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검토 후 계약기간 연장될 수 있음.

2. 근로 조건

신분사항	계약기간	근무형태	보수수준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사무보조원) [육아휴직 대체]	근무시작일 ~ 2027. 7. 5	근로시간 09:00~18:00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2,271,280원(세전) - 명절휴가비 기본급 60% - 맞춤형 복지비 연 500,000원 - 4대 보험 가입

3. 응시대상 및 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별표1>

<별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 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복수국적자 제외)
 - 라.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마. 학력 : 제한사항 없음
 - 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사.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출·퇴근 가능한 자(관사 미제공)
- ※ 기관 소재지 : 울산 중구 중가로 405-1(성안동 238)

4. 가점 · 우대사항(서류전형만 적용)

가. 가점사항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형평가점대상 응시자(접수 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증빙자료 제출)

<저소득층의 범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상기 요소들 중 둘 이상의 경우에도 1개만 인정

나. 우대사항 : 직무관련 경력 및 자격증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소지자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소지자
- 관련분야(행정사무) 근무 경력자(최소 경력 6개월 이상 우대)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1차)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자격, 제출서류 검토 후 서류전형 심사기준 적격여부에 따라 합격을 결정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초과일 경우,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평정 성적이 높은 순으로 3배수의 합격자를 결정(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합격)

◎ [서류전형 심사기준]

- 근로자로서의 소양(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평가)
-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증 소지
-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가

- 업무수행능력 및 가능성
- 선발분야 업무수행 적합성
- 응시분야 업무관련 기본지식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성 및 성실성

6.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6.7.29.(수) ~ 8.5.(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6.7.29.(수) ~ 8.5.(수)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2층 총무팀 · 접수시간 : 09:00~18:00 (12:00~13:00 제외) ※ 등기우편 접수 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으로서, 마감 익일 도착분까지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2026.8.7.(금)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합격자에 한해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별도 통보 (불합격자 별도 회신 없음)
면접시험	2026.8.11.(화)	·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2층 대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26.8.13.(목)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 합격자에 한해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별도 통보
채용등록 기간	2026.8.18.(화) ~ 8.21.(금)	· 채용예정자 등록서류 제출(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개시 예정일	2026.8.24.(월)	· 근로개시일은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합격자 별도 통보 및 협의

※ 우편 접수처: 울산 중구 종가로 405-1,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2층 총무팀
(우편번호: 44543) **겉봉투에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통지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제출서류 총괄표 【붙임 1】
- 응시원서 1부 【붙임 2】
- 이력서 1부 【붙임 3】
-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붙임 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붙임 6】
- 비위 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붙임 7】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붙임 8】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 9】
- 주민등록등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추가제출)
- 우대요건 관련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사무’ 분야의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증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소 1년 이상 인정)
 - ※ 경력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또는 직급),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함. 경력증명서와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1종을 함께 제출해야 경력으로 인정함 (예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저소득층 증명서류 사본 1부
 -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 장애인 증명서류 사본 1부
 - 기타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증명서류 사본 1부(수급기간 명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 증빙자료가 없는 자격 및 경력 사항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제출서류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되어야 하며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서류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최종합격자 등록 시

- 기본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임용신체검사 지정 의료기관)
- 반명함판 사진 1매(최근 3개월 이내 촬영)
- 통장 사본 1매(본인명의 통장)

○ 공정채용확인서 1부

○ 후견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후단번호 표시)

8. 참고사항

- 기간제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등),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붙임 10】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경력증명서(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외 모든 서류는 시험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총무팀(052-279-8025)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을 정확히 기재함
3. 성명 · 생년월일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자택전화(가족)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4.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서명

【붙임 1】

서류전형 제출서류 총괄표(기간제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사무보조원

제출 목록

목 록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붙임 1】(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 1부 【붙임 2】(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 【붙임 3】(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 【붙임 4】(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붙임 5】(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붙임 6】(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붙임 7】(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1부 【붙임 8】(필수)	☐ 제출 ☐ 미제출
⑨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붙임 9】(필수)	☐ 제출 ☐ 미제출
⑩ 주민등록등본 1부 (남자는 병역사항 기재된 초본도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⑪ 장애인 증빙서류(정부24에서 발급한 증명서)	☐ 제출 ☐ 미제출
⑫ 관련분야 근무경력(재직)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⑫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⑬ 사회형평가점 대상자 증명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제출 ☐ 미제출

- ※ ☐에는 서류 제출 여부를 √하여 맨 앞장에 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경력 및 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6. . .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응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응 시 원 서

본인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2026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관 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응시번호	26-사무-	성명	(한글)	
응시분야	사무보조원		(한자)	
생년월일		전자우편		
주 소	(우)			
휴대전화		자택전화(가족)		
상기 본인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과 관련하여 채용관리 등을 위한 상기의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 이용·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5년 (보유기간 경과 시 즉각 폐기) * 거부시 불이익 조치 : 개인정보이용제공 부동의 시 본 채용에 대한 응시 불가 제공인 (서명 또는 인)				

※응시번호	26-사무-	응 시 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분야	사무보조원	성명		생년월일	
2026년 월 일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인)					

주 의 사 항

-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총무팀으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 3. 시험당일은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이 력 서 】

1. 인적사항

성 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년	월	일 (만	세)	성별	
주 소						
연락처	(본인)		(가족)			
e-mail						

2. 경력사항

근무기간	직장명	직위	담당업무
~			
~			
~			
~			

3. 자격사항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자격증명	발 급 기 관	취득일자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자 기 소 개 서

성명	생년월일	응시분야
		사무보조원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배우자 직업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하고 서명은 반드시 자필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서작성 프로그램 사용(글꼴: 휴먼명조, 글씨크기: 13, 줄간격 :160mm, 글자색 : 검정색)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고유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자기소개서, 범죄경력 등), 주소, 전화번호, 학력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등 채용심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4)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3조, 제24조, 시행령 제18조, 제19조
- (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자기소개서, 범죄경력정보 등
- (3)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존사유 :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관리
 - 보존기간 : 채용 후 퇴직일 까지
 - 보존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 (4)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근거자료 확인 불가로 인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분야	사무보조원
생년월일	. . .		

본인은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시행 2026년도 제1회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공공기관의 신규 직원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유 , ☐무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유 , ☐무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유 , ☐무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유 , ☐무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유 , ☐무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여부 -----☐유 , ☐무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유 , ☐무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2026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본인은 법무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기간제근로자에 채용되면서 ‘법무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 제8조(채용결격 사유)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
인될 경우 채용 취소 등 법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붙임 9】

■ 법무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기간제근로자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